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2026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제도 소개 및 확인 신청 가이드



고객센터 1566-6487
카카오톡 채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홈페이지 WWW.SMES.GO.KR/VENTUREIN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제도 소개 및 확인 신청 가이드

2026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제도 소개 및 확인 신청 가이드



Contents

Part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8
- 8. 확인유형 및 요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9
- 벤처기업 확인마크 9
- 주요 우대지원제도 10

Part 2 벤처기업 확인절차

- 확인절차도 16
- 신청 16
재확인 (연장) 방법
- 접수 및 납부 17
- 전문평가기관 평가 17
- 18.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확인서 발급 18

Part 3 유형별 가이드

- 벤처투자유형 22
- 연구개발유형 24
- 혁신성장유형 27
- 예비벤처유형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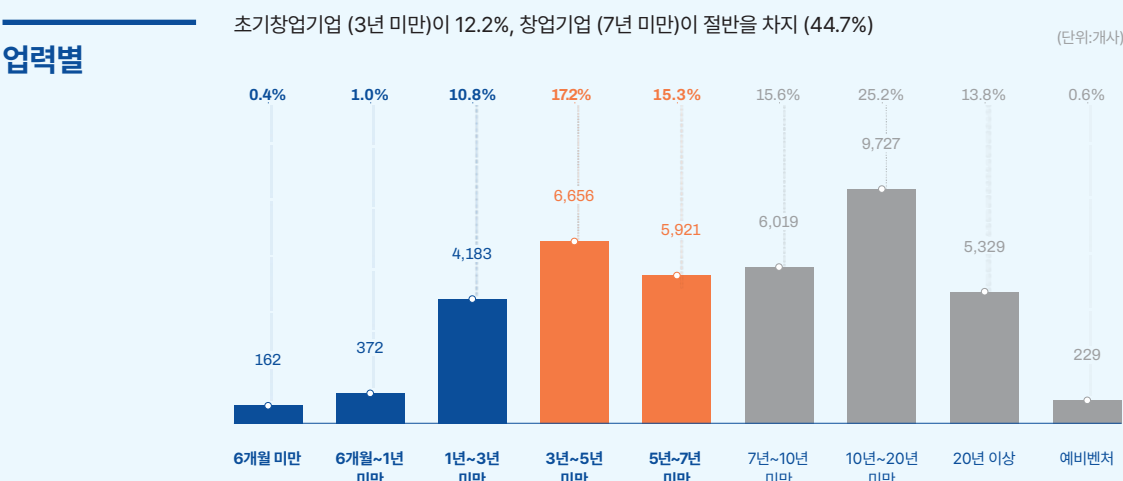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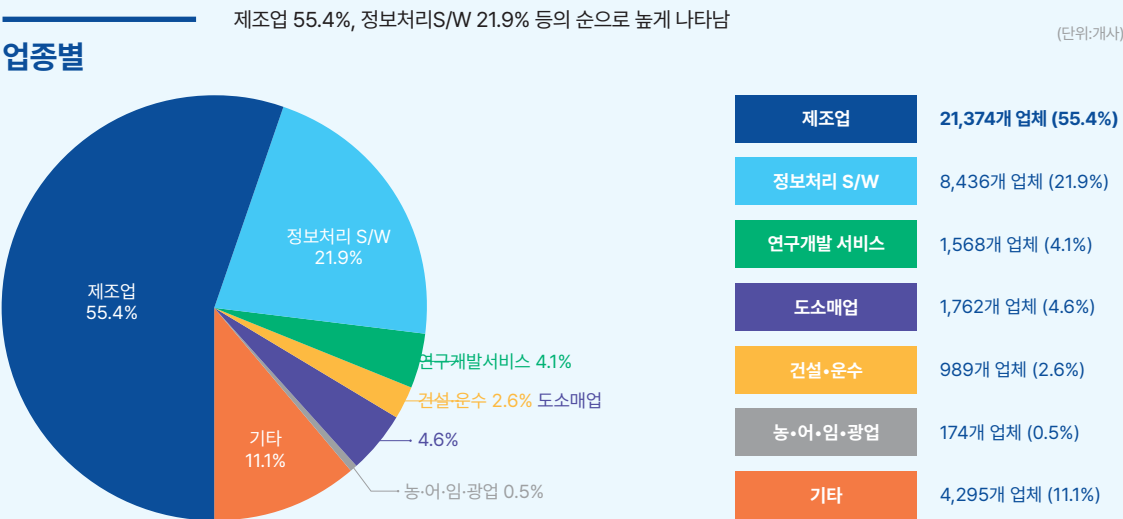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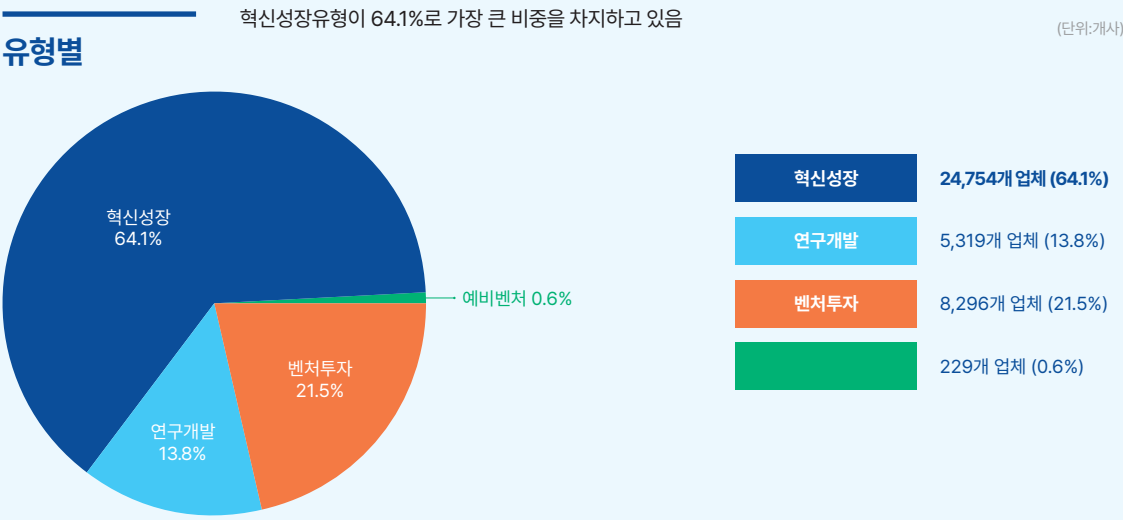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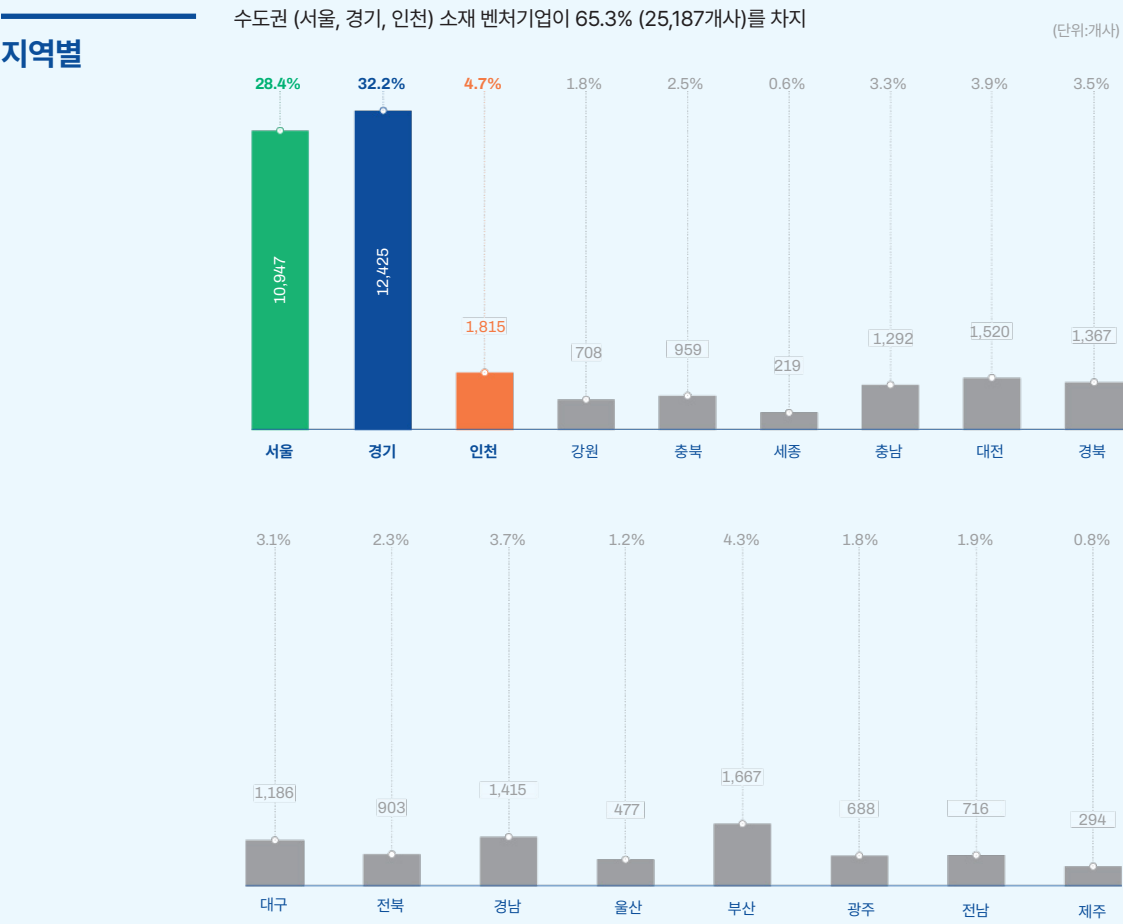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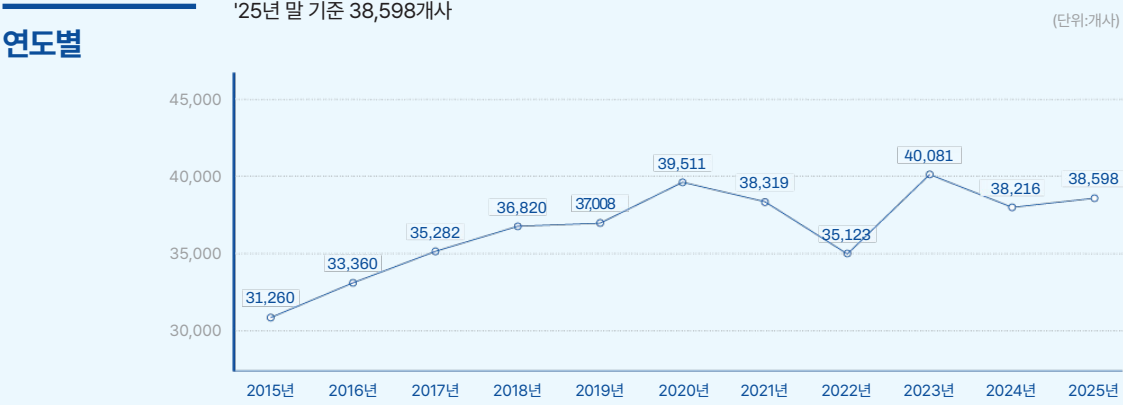
Part 4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 유형별 사업계획서 구성 32
- 확인심의 시 중점사항 36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36

Part 5 분야별 우대지원제도 안내

- 세제 44
- 금융 55
- M&A 60
- 창업 62
- 입지 65
- 특허 70
- 인력 72
- 광고 79

벤처기업 현황 ('25. 12월 말 기준)



Part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
-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 확인유형 및 요건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벤처기업 확인마크
 - 주요 우대지원제도
-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벤처기업 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 (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벤처기업협회를 통한 단일창구로 진행



※ 신청 접수 3단계 검토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확인유형 및 요건

확인유형	기준 요건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단, 문화콘텐츠 7% 이상)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 5천만원 이상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적용 제외)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유형별 세부사항은 **Part 3 유형별 가이드** 참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7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

벤처기업 확인마크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벤처기업을 표현한 비상하는 화살표와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높이 도약하는 코리아 벤처기업 (K-Venture)을 의미하는 K가 결합된 로고



세로조합	가로조합	엠블럼

벤처확인기업은 **사용정책에 허용된 조건 하에 '벤처기업 확인마크'의 사용권리를 가짐**

- 확인마크는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동안 확인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활용 가능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패 설치 예시



주요
우대지원
제도

분	지원제도	세부내용	법적근거
세제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㉑-㉑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2의3㉑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을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3의2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받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2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따른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6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16의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46의7
	주식매각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46의8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㉑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벤처기업이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을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6㉑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88의4㉑

주요
우대지원
제도

분	지원제도	세부내용	법적근거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술보증규정 §16㉑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5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㉑
	과학기술기금 벤처기업 투자 허용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22㉑
	국민연금 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 투자조합 출자 허용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국민연금기금 증식사업 대상	국민연금법 §102㉑7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농림수산업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8㉑
	대학교육기관 적립금을 소속 교원·학생 창업벤처 투자 허용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은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32의2㉑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등 투자 특례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3
	국방벤처협약기업 방산육성자금 융자 우대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 군수품 매출 비중이 5% 미만이라도 방산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㉑
M&A	벤처기업 합병 주주 총회 소집기간 단축	벤처기업은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소집 기간 단축 적용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5의3㉑
	벤처기업 소규모·간이 합병 특례	벤처기업은 소규모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 또는 간이합병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80% 이상 보유)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5의9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5의10㉑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 대체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5의11

주요
우대지원
제도

분	지원제도	세부내용	법적근거
창업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 벤처기업 근무 (대표·임원) 휴직 허용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㉑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 (대표·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2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벤처기업은 현물출자의 대상에 지식재산권 등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6㉑
	벤처기업 현물출자 감정평가자 확대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중 지식재산권 등의 감정 평가시 기술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6㉑
입지	벤처기업 창업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특례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 이내로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을 부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8의2 ㉑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 자격 특례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 공장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7의4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8의3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㉑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 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수도권 이외지역 6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㉑
특허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부여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부여 (벤처기업 우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9호) §12㉑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6호)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출원인과 기업 (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특허법 시행령 §9㉑ 실용신안법 시행령 §5
	벤처기업 임직원 산업재산권 전용실시권 부여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겸직한 교육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이용 허락 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9㉑

주요
우대지원
제도

분	지원제도	세부내용	법적근거
인력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경영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공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3㉑~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의3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2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㉑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3명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6㉑
	벤처기업 창업자 임명일자 연기	벤처기업 창업가 및 벤처기업 예비창업가는 병역 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병역법 시행령 §129㉑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훈령 제2071호) §22, §25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벤처기업은 상시 근로자수를 완화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 상시근로자 5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1908호) §10㉑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201호) § 2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성평등가족부 예규 제1호) § 2
	벤처기업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부여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는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2025-15호) §5㉑
	벤처기업 인턴근무 학점 이수 인정 (정보통신 관련학과)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허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2
	과학기술유공자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 지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활동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광고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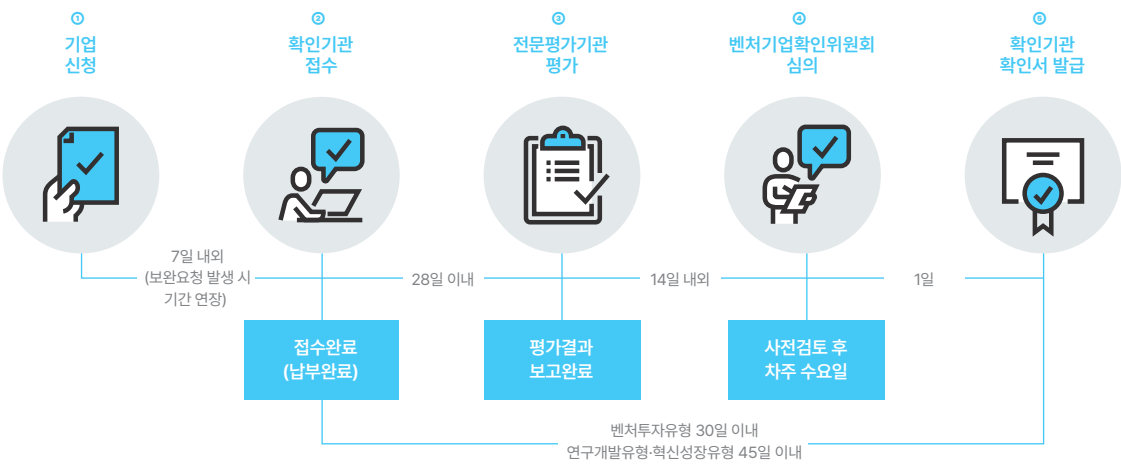
벤처기업 확인절차



-
- 신청
 - 접수 및 납부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확인 어떻게 받나요?

확인절차도



신청

※ 모든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진행됩니다.

확인유형 선택 : 벤처유형 자가진단 [확인신청]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제출서준비 : 선택한 확인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제도안내) -
(유형별 안내)에서 다운로드] 미리 준비

회원가입	기업정보 입력
확인신청	로그인 [확인신청]-[확인신청]에서 신청
확인유형 선택	기업에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요건확인	'벤처기업확인 이취소 사유에 대한 고지'를 확인한 회사개요 (업종, 자본금, 결산월, 당기 재무제표 확정여부) 작성
기업신용평가사 정보 활용 동의	기업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 활용 동의 여부 확인 (정보 활용 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 자동연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페이지 상단의 '작성 가이드' 참고 *입력한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수
신청첨부파일 업로드	유형별 필요서류를 확인 신청첨부파일 업로드 (자동연계된 파일은 업로드불필요)
최종 제출	
	[MY벤처]-[MY벤처현황]에서 진행상태 확인 가능

재확인 (연장) 방법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확인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신청·평가절차로 진행
- 기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1개월 이내 신청하여 재확인될 경우, 재확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

접수 및 납부

접수 및 서검토

- 신청서류 완비 시 문자를 통한 확인수수료 납부 안내

확인수수료 납부 : [MY벤처] - [MY벤처현황]에서 확인수수료 (기업부담금) 납부 → 접수완료

- 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가능,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기업담당자 메일)

벤처확인 수수료 (VAT 포함)

확인유형		합계		정부지원금 ³⁾		기업부담금	
		신규	재확인	신규	재확인	신규	재확인
벤처투자유형		275,000원		100,000원	50,000원	175,000원	225,000원
예비벤처유형		495,000원		150,000원		345,000원	445,000원
연구개발유형		495,000원				345,000원	445,000원
혁신성장유형		605,000원				455,000원	555,000원
	이노비즈 연계	440,000원				290,000원 ¹⁾	390,000원
	예비벤처 재확인	-	330,000원	-		-	280,000원 ²⁾

1) 이노비즈 인증 6개월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 시 감면

2)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재확인 신청 시 감면

3)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

4) 정부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정부지원금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

전문평가기관 평가

확인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 현장실제조사
-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확인유형별 업종별·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을 자동배정

확인유형별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

확인유형	전문평가기관	평가사항	
		요건심사	현장실제조사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요건 충족 여부	-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	사업성장성 평가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
예비벤처유형	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

※ 이노비즈 인증 6개월 이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의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벤처기업 확인여부 최종심의 의결

최종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등록된 번호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확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기업이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 건당 1회에 한함)
 - 인 결과와 함께 통지된 탈락사유를 참고하여 [확인신청]-[이의신청서 신청] 또는 [MY 벤처]-[벤처기업 심의결과] 확[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신청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재심의·의결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벤처투자유형 2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30일 이내 통보

확인서 발급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

[MY벤처] - [MY벤처현황] -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우측 [확인서 출력]에서 출력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 (유효기간 내 1회 한정)

- [MY벤처] - [MY벤처현황] -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하단 [벤처기업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 [바로 가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8조의5 의거,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는 벤처확인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시

Part 3

유형별 가이드



-
-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예비벤처유형
-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 항의 2호의 가목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

벤처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소기업은행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한국벤처투자	외국투자회사	일반은행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기술보증기금 *	농식품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전문개인투자자 (전문엔젤)	신용보증기금 *	클라우드펀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기획자 * (엑셀러레이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 (‘21.2.12) 이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 투자유치기간이 1년 이상 (‘23.7.4) 이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 클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지분증권 (우선주, 보통주) 투자만 인정함

•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인수 (보통주/우선주) □ 무담보정환사채 (CB), 무담보교환사채 (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BW)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 (CN), 프로젝트 투자
--

신청정보

항목	세부항목
기업개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
대표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담당자 정보	성명, 직급, 휴대전화번호 등
고용현황	종사자 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기준)
요건검증	투자자유형, 투자유형,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입금일, 투자기관 담당자 등

제출서

제출서		체크사항
1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문서
2	사업자등록증	-
3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 예정 또는 확정 최근 신고분 (세무서 제출분) -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5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자료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 (1, 2개년)

※ 투자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서류 (주주명부, 통장잔고확인서 등)는 전문평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별도 요청
신용평가사 정보 활용에 동의 시, 제출서류 일부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출됨

추가서(일부 필수)		
1	투자계약서	계약서 전체 사본으로 민감정보 제외 제출 무방/투자금액, 투자처, 투자지분 등은 확인되어야 함
2	투자금 입금내역 첨부	엑셀형태가 아닌 은행 발급 영수증 형태로 첨부
3	주주명부	신청일 기준 최근 2주 이내 발급분으로 직인 날인하여 첨부

※ SAFE유형 선택 시 추가서류 첨부란이 활성화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㉞ 항의
2호의 나목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참고)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3 제1항
※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업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 (21)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 (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제외>	7%	5%	5%
컴퓨터 및 주변장치 (263)	6%	6%	5%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	6%	6%	5%
전기장비 (28)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 (261, 262)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 (45~47)	5%	5%	5%
통신업 (61)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582)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62)	10%	8%	8%
정보서비스업 (63)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평가지표

대분	중분	지표명	평가내용	지표 유형	신규 기업		재확인 기업
					창업 3년 미만	창업 3년 이상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고용상승률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직원 수 증감 추세 평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정량	-	10%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 종합 평가	정성	20%	20%	1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정성	50%	40%	30%
		협업 실적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국내·외 업무(사업)상 제휴 실적 평가	정량	10%	10%	10%
		ESG 경영의 적절성	기업의 ESG 경영의 도입수준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정성	3%	3%	3%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정성	20%	20%	20%
		사업성과	최근 3년간 재무 (매출, 영업이익, 수출액), 서비스 (연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 사업진행 (바이오·의약품) 성과 추세 평가 (2개 지표 선택평가)	정량	-	-	20%

신청정보

항목	세부항목
기업개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
대표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담당자 정보	성명, 직급, 휴대전화번호 등
재무 및 고용현황	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사자 수 등
6개월 이내 이노비즈기업 확인여부	유효기간 시작일자, 이노비즈확인서 발급번호
예비벤처 확인 여부	확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제출서

제출서		체크사항	
<기본서>			
1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문서	
2	사업자등록증	-	
3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일이 속하지 않는 직전 4개 분기 자료 -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5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자료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 (1, 2개년)	
6	매출원장	신청일이 속하지 않는 직전 4개 분기 자료 -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최근 3개년 자료 (조회기준: 각 연도별 12월 31일 (말일) 기준)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 (1, 2개년)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직원 명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9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발급 (rnd.or.kr)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발급 (rnd.kocca.kr)	
10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변경신고내역 포함	
11	인건비 산정내역서	연구개발비 인건비	지정양식 필수 [고객지원] - [자료실] 02.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참고 및 제출서
12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인건비 외 모든 연구개발비용	
13	주주명부	법인사업자만 해당,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추가 서(해당 시 제출)>			
1	대표자 경력 증빙서류 (동종업계 경력만 인정)	대표자 경력증명 서류 (동종업계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대표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택1	
2	자체기술개발 증빙서류	- 조직도 및 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 -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 (인건비 산정내역서 작성 시 필수 제출) - 임차 (리스, 렌탈 등) 계약서 - 매입장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작성 시 필수 제출) - 개발계획서 - 개발비 원장	
3	위탁/공동기술개발 증빙서류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자문계약,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 개발비 원장 - 인건비 원장 - 매입장 (매입세금계산서) - 위탁개발비 이체내역 (통장송금내역/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중 택1)	
4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 교육과정 안내 관련 공문 - 교육이수 증빙 및 교육비 지출내역 - 매입장 (매입세금계산서) - 인력개발 관련 집행내역 (통장송금내역/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중 택1)	
5	수출실적증명서	성장전략 - 사업성과 (재확인기업)에서 수출액 체크 시 제출	

• 신용평가사 정보 활용에 동의 시, 제출서류 일부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출됨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 항의 2호의 다목

요건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평가지표

대분	중분	지표명	평가내용	신규 신청기업		재확인 신청 기업
				창업 3년 미만	창업 3년 이상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전담 연구조직 보유형태, 기술개발 전담 인력 비율,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평가	30%	20%	20%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	20%	10%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30%	20%	10%
		R&D 실적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과 관련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R&D 실적 평가	10%	10%	20%
	기술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 평가	20%	20%	3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평가	10%	10%	10%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고용상승률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직원 수 증감 추세 평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10%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성장성 등 종합 평가	20%	20%	1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50%	40%	30%
		협업 실적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국내·외 업무 (사업)상 제휴 실적 평가	10%	10%	10%
		ESG 경영의 적절성	기업의 ESG 경영의 도입수준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3%	3%	3%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20%	20%
		사업성과	최근 3년간 재무 (매출, 영업이익, 수출액), 서비스 (연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충거래액), 사업진행 (바이오·의약품) 성과 추세 평가 (2개 지표 선택평가)	-	-	20%

신청정보

항목	세부항목
기업개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
대표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담당자 정보	성명, 직급, 휴대전화번호 등
재무 및 고용현황	자본금, 종사자 수 등
벤처확인/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중복신청여부	6개월 이내 이노비즈기업 확인여부, 이노비즈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자, 이노비즈확인서 발급번호
예비벤처 확인 여부	확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제출서

제출서		체크사항
<기본서>		
1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문서
2	사업자등록증	-
3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자료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 (1, 2개년)
5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자료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 (1, 2개년)
6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최근 3개년 자료 (연도별 12월 말일 자 기준)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 (1, 2개년)
7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직원명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8	주주명부	법인사업자만 해당,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추가 서(해당 시 제출)>		
1	대표자 경력 증빙서류 (동종업계 경력만 인정)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대표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택1
2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발급 (rnd.or.kr)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발급 (rnd.kocca.kr)
3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로 인정받고자 할 시 제출
4	수출실적증명서	성장전략 - 사업성과 (재확인기업)에서 수출액 체크 시 제출

• 신용평가사 정보 활용에 동의 시, 제출서류 일부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출됨

예비벤처유형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 항의 2호의 다목

요건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평가지표

대분	중분	지표명	평가내용	비율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청인 (대표)의 기술개발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수상, 연구실적,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창업교육 수료 실적 등을 평가	20%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40%
	기술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 평가	40%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 종합 평가	4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40%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화 및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신청정보

항목	세부항목
예비 창업자 정보	성명, 휴대폰 번호 등
담당자 정보	성명, 휴대폰 번호 등

제출서

제출서		체크사항
<추가 서(해당 시 제출)>		
1	대표자 경력 증빙서류 (동종업계 경력만 인정)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대표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택1
2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최근 3년 이내 입상한 창업경진대회 상장, 상패 또는 입상확인서 등
3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실적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4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류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교육 수료증 또는 인턴 수료증

Part 4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
- ① 유형별 사업계획서 구성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확인심의 시 중점사항
-



연구개발 유형



1. 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능과 BM (비즈니스 모델)

기술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작성



2.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 (제품/서비스)의 사업 목표시장과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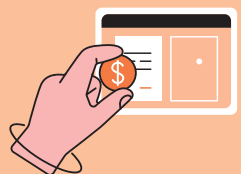
3. 경쟁사 분석

'2.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 (최대 3개사)의 특징점,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작성



4.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2.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장점유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5. 자금운용 계획

창업 소요된 자금의 규모 (업력 3년 이상 기업은 최근 3년 기준)와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현을 위한 자금조달 현황과 향후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6. 팀 구성

대표자의 주요 경력, 기업가정신 발휘 경험 등 작성



7. 기술개발 실적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국내·외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자체 연구개발실적 작성



8.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및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등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을 작성하며,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추가된 지식재산권만 추가하여 작성



9. 외부 협업 실적

개발 중인 기술 (제품/서비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이나, 제휴 목적의 비밀유지협약 (NDA), MOU 등 실적을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신규 추가된 건만 작성



10. 사업성과 (재확인 기업만 해당)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 (GTV), 의약품 개발단계 (바이오·의약품만 해당) 성과 중 신청기업에서 2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최근 3년간 실적 작성



1. 기술 (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기술 (제품/서비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 (불편함)과 해결 필요성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개선 (고도화) 현황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 (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에 대해 작성



2. 솔루션으로서의 기술 (제품/서비스) 소개

'1. 기술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항목에서 작성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보유 기술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차이점, 특징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기술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정 (추진 경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향후 3년간의 기술 (제품/서비스)발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 (제품/서비스)의 사업 목표시장과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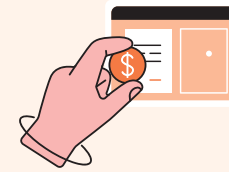
5. 경쟁사 분석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 (최대 3개사)의 특징점,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작성



6.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장점유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7. 자금조달 계획

창업 소요된 자금의 규모 (업력 3년 이상 기업은 최근 3년 기준)와 신청 기술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현을 위한 자금조달 현황과 향후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8. 팀 구성

대표자의 주요 경력, 기업가정신 발휘 경험, 연구개발조직 및 기술개발인력 현황 등 작성



9. 연구개발비

기술 (제품/서비스)개발을 위해 사용된 신청일 기준 당기 연구개발비 합계액 작성



10. 기술개발 실적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국내·외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자체 연구개발실적 작성



11.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및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등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을 작성하며,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추가된 지식재산권만 추가하여 작성



12. 외부 협업 실적

'3.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에서 작성한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이나, 제휴 목적의 비밀유지협약 (NDA), MOU 등 실적을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신규 추가된 건만 작성



13. 사업성과 (재확인 기업만 해당)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월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 (GTV), 의약품 개발단계 (바이오·의약품만 해당) 성과 중 신청기업에서 2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최근 3년간 실적 작성

확인심의 시 중점사항

Q 기업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A 1. '유사기술/제품 대비 신청사가 가진 차별성 여부, 보유 기술/특허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제출 2. 신청기술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인력 및 인프라 보유 여부, 향시장확대전략 등

Q 사업계획서 작성 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

A 1.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라인'등을 참고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 제시한 기술과 사업계획서 간의 연관성 등

Q 사업계획서 작성 시 꼭 피해야 할 부분

A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 자제 (ex. 단순한 노력호소, 경쟁사 분석 미흡,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 나열)

Q 재심의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

A 본심의 시 보완요청한 내용이 성실하게 보완되었는지 여부, 추가적인 객관적 근거자료 등 보강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혁신성장유형 기준)

1단계

기술 (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1. 농업 생산성 및 식물 면역력 향상

- 한국은 경작 면적이 한정적으로 단위 면적당 농작물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나,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 (자료출처: 000)◎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재심의-의결
- 따라서, 작물을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효율, 고기능성의 0000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 (토양, 영양분, 미생물, 기등)을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2. 0000 와 0000

- 00 는 사용량 대비 효과 지속력과 식물의 양분 활용 효율이 낮고, 토양의 낮은 양이온 교환 용량으로 우천 시 다량의 영양분이 소실됨
- 따라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추가 비용 및 노동력이 필요하며, 소실된 영양성분은 하천 등으로 유입돼 부영양화를 유발하고 비점오염을 발생시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00개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중인 00는 합성수지를 코팅제로 사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있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자료출처:000)
- 따라서 기존 00의 문제점을 보완한 00를 적용한 00개발이 필요하며, 최근 00의 코팅제를 생분해되는 성분으로 대체하는 00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자료출처:00)

3. 강화되는 환경오염 규제와 2050 탄소중립

- 국내외의 환경오염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동향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 필요함
- 또한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함께 탈플라스틱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함
-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달성을 위해 00 사용량 1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공지사항]→[자료실]의 벤처기업사업계획서 작성예시 (2023년 개정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솔루션으로써 기술 (제품/서비스) 소개

1. 제품의 명칭

- 00000사용량 감축과 작물 생육 증대를 위한 00된 영양성분 담지 00기반의 영양성분 방출을 조절하는

2. 제품의 개요 및 문제해결 방안

-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대할 수 있는 미생물, 유용 물질, 천연추출물 등을 00된 00기반 000에 단일 또는 복합 적용한 0000
- 000 의 0000는 미생물의 활동으로 분해되어 식물 영양성분 및 미생물의 이로 이용되어 토양 내 잔류물을 남기지 않음
- 00분해 00 는 토양에서 미생물의 주거지 역할을 하며, 토양개량제 역할과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제로써 작용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음
- 제품에 적용되는 미생물은 유전자원법 시행에 따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토양으로부터 00을 분리하여 확보하고 있고 지속해서 균주를 발굴할 예정
- 제품의 적용으로 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00 의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고, 00에 기능성을 추가할 수 있어 화학 제제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음
- 000등을 복합 적용한 제형으로 이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고, 시비의 편의성과 보관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노동력 및 소요 비용 절감 가능함

3. 제품의 주요 기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 당사에서 개발 중인 기술 000건은 특허 등록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을 보호하고자 함
- 개발된 기술을 통해 제작된 시제품은 인증기관의 00시험을 통해 00 작물에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생육특성면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있게 높음을 확인함
- 또한 00및 00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통해 00 로서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

3단계

제품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추진경과)

1. 기술 개발의 목표

- 000통한 영양성분 방출 조절형 000 의 개발

2. 기술의 개발 현황

- (2X.XX.~2X.XX.) 0000 개발 및 000시제품 제작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000 기술 및 000 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000 시제품을 제작함
- 형태, 00방법, 미생물의 유무 등 다양한 조합의 변경으로 총 00 종의 00 시제품을 제작함
- 제작된 시제품은 00의 유무에 따라 000 가 달라짐을 확인하였고, 시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특허 출원중임
- 개발된 시제품은 000, 품질시험 등 자체 및 인증기관 평가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000대비 적은 양의 000으로도 충분히 작물이 잘 생육함을 확인하였고, 작물에 대해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함

- (2X.XX.~현재) 000발굴

-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적인 생물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다양한 토양으로부터 약 000 종의 미생물을 분리하여 확보하고 있음
- 분리된 미생물은 000 평가를 통해 균주에 따라 식물의 생장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였음
- 분리된 미생물의 오염물질 (농약 등) 분해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 (2X.XX.~현재) 000복합000고도화

- 개발된 기본형 000 에 기능성을 추가하기 위해 작물의 생육 촉진 및 면역력 증대를 위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는 천연 추출물을 확보하였음
- 확보된 추출물을 적용하여 000와 0000조합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음

4단계

제품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향후 3년간 추진계획)

1-1 단기 연구개발 목표

- 영양성분의 방출을 제어하여 00의 사용량을 000 이하로 절감하고 기존 000대비 생산성 000 이상 향상시 키는 000또는 0000인증 및 양산화

1-2 단기 연구개발 추진계획

- 1년차

- 000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개선 사항, 차별성 등 평가 및 제품 개선
- 000기반 0000의 인증 준비 (유기농업자재 또는 녹색기술 등) : 실제 000 사용 절감 효과 및 000생산성 향상 평가

- 2년차

- 개발된 0000인증 획득 및 양산화
- 식물 생육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0000 기반의 0000개발 (제품 고도화) : 미생물 또는 천연 추출물 적용으로 000에 0000증진을 위한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
- 고도화된 0000의 성능 평가 : 000테스트를 통해 개선 사항, 기존 자사 제품과의 차별성, 00영향 등을 평가

- 3년차

- 000기반 000비료의 양산 안정화

2-1 중장기 연구개발 목표

- 0000제작 기술의 고도화
- 0000를 활용한 제품군 확대

2-2 중장기 사업화 추진계획

- 기존의 00000개발에서 0000 개발로 제품군 확대
- 다양한 0000 방법 개선을 통해 방출 시간을 세밀하게 조절한 00000 개발
- 바이오 소재 또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제품개발

5단계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1. 목표시장 및 고객의 범위

- 0000및 0000시장
- B2C : 반려 식물 재배 소비자 (식집사), 도시농업 (텃밭) 농민 등 개인 소비자
- B2B : 스마트팜, 농업법인, 농협, 대형 마트 등

2. 국내 목표시장 분석

- 국제적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 정책 강화 움직임으로 이를 위한 제품개발에 적극적 연구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000사용량 12%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현재 00농업을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국내 000시장의 규모는 약 1.5조로 000비료 시장은 전체 00시장의 2% 이내로 그 규모는 아직 작으나 연평 균 성장률이 00% 이상으로 국내외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000시장 역시 화학 제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연평균 00% 이상의 성장률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0000)
- 스마트팜은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 방식으로 정부 및 투자자들의 지원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직 물리적인 환경 조성에만 기술이 집중되고 있어 작물의 품질 (향, 맛, 영양 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전용 000 의 개발이 필요함

- 최근 '식집사', '반려식물', '그린테리어' 등과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 련된 용품의 매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매시장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출처 : 00000)

3. 세계 시장 분석

- 글로벌 000 시장은 약 200조 원 규모로 중국, 인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판매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이나 제품 가격 하락으로 실제 시장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자료출처 : 0000)
- 하지만 국제적 환경보호 정책 강화로 0000 의 수요 및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 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출처 : 0000)

6단계

경쟁사 분석

1. 경쟁사 현황

- 국내 000 시장은 상위 000 개 기업에서 0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중 0000이 000%의 점유율을 보유함
- 현재 000 를 판매하는 기업 중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곳은 크게 00업체로 0000, 0000, 00000
- 00와 000의 경우 0000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00은 0000를 통해 000를 00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000의 경우 0000를 통해 000를 000하는 기 술을 개발하여 올해 초 특허를 출원함

2. 자사 기술의 차별성

- 농업, 환경, 소재 등의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0000
 - 토양개량제, 미생물, 유용 물질, 천연 추출물의 복합 적용으로 이들의 장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고 시비 및 보관 편의성을 개선해 노동력 및 소요 비용 절감 가능
- 0000000
 -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0000의 적용으로 기존 0000를 사용한 0000의 미세플라스틱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개선 가능
- 한국 토양에서 분리한 한국형 00000
 - 유전자원법의 시행으로 독자적인 생물자원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한국의 다양한 환경 토양에서 미생물을 확보하여 0000에 적용함

3. 경쟁사 기술 대비 경쟁 전략

- 친환경 바이오 기반 소재를 복합 적용한 0000는 기존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 (0000)로 현재 타사에서 개발 중인 0000 대비 친환경 및 고기능성 제품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음
- 0000에 대한 0000등 정부 부처와 기타 업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술개발 수준은 00000 에 국한되어 있음
- 0000 를 적용한 제품은 일반 화학 기반의 업체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각 소재 및 적용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함

7단계

시장진입 및 확대전략 (추진경과)

1. 목표시장 진입 및 점유 목표

- 매출액 목표
 - 202X년 : 000 원 (국내)
 - 202X년 : 000 원 (국내), 000 달러 (해외)
 - 202X년 : 000 원 (국내), 000 달러 (해외)
- 시장점유율 목표
 - 202X년 : 000 % (국내)
 - 202X년 : 000 % (국내), 000 % (해외)
 - 202X년 : 000 % (국내), 000 % (해외)

2. 국내전략

- 00인증, 00 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친환경 마케팅 진행
- 202X년 하반기 제품 양산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제품 판매 시작 예정
- 초기 판매는 판매 협의 완료된 기업의 루트와 자사 및 국내 온라인 마켓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 예정
- 오프라인
 - 판매 협의 완료 기업인 0000판매망을 통해 제품 판매
 - 대형 마트 (000, 000, 000 등) 입점 및 000 유통망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확대
- 온라인
 - 자사 사이트 (0000)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
 - 국내 온라인 마켓을 활용한 판로 확보

3. 해외전략

- 정부지원 사업을 통한 000, 0000등의 글로벌 온라인 마켓을 통한 온라인 판매로 판로 개척 예정

8단계

시장진입 및 확대전략 (향후 3년간 추진계획)

1. 1년 차 : 국내 시장 제품 판매

- 판매 협의 완료 기업의 판매 루트 및 자사 사이트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예정
- 판매 패턴 분석을 통해 수요가 집중되는 타겟 특정 및 특정된 타겟의 니즈에 맞는 방향으로의 판매 전략 재수립예정

2. 2년 차 : 제품 고도화 및 판매 시장 확대

- 국내 온라인 마켓을 활용한 제품의 판매처 확대 및 대형 마트, 000등의 대형 판매 루트 입점 진행
- 타겟 고객 (개별 소비자, 스마트팜, 농업 법인 등) 맞춤 제품 개발 및 친환경 마케팅 진행

3. 3년 차 : 해외 온라인 마켓 진출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또는 해외 박람회 등을 활용한 해외 판로 개척
- 해외 시장 판매를 위한 국가별 인증 또는 허가 획득 예정
- 국가별 환경 및 조건에 맞는 특화 제품개발 진행

9단계

자금 운용 계획

1. 현재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비용 : 000 원

- 전담 개발인력 인건비 : 000 원
- 소재, 장비 등 구입비 : 000 원
- 시험인증, 특허 비용 등 : 000 원

2. 현재까지 확보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자금 : 000 원

- 자금구성
 - 자본금 : 000 원
 - 용자 (기술보증) : 000 원
 - 정부지원 (000지원) : 000 원

3. 향후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필요자금 : 000원

- 전담 개발인력 인건비 : 000 원
- 외주 생산 (개발)비 : 000 원
- 시험인증, 특허 비용 등 : 000 원
- 소재,기계,부품 등 구입비 : 000 원

4. 향후 3년간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자금 조달계획

- 자체 자금조달
 - 영업이익 : 000 원
- 외부 자금조달
 - 차입금: 202X년 0000원 (기술보증자금)
 - 외부투자유치: 국내외 기업체 000 원 목표
 - 정부R&D지원사업 : 000 원

Part 5

분야별

우대지원제도 안내



-
- 세제 ④ 창업 ④ 인력
 - 금융 ④ 입지 ④ 광고
 - M&A ④ 특허
-

① 세제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

지원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 범위 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 범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감면 적용 제외 경우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불가
 -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그 취소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는 제외

• 감면기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함

•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50%를 감면

신청·접수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

제출서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등

처리절차

- 감면신청서 (주요 제출서) 작성 → 접수 → 감면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제3항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대상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지원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가치 금액이란?

- 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함
 - 합병등기일 전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2)

사후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신청·접수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제출서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등

처리절차

- 공제신청서 (주요 제출서) 작성 → 접수 → 공제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제1항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대상

- 2028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단,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은 제외)
 -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지원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

별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신청·접수**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제출서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등

처리절차

- 공제신청서 (주요 제출서) 작성 → 접수 → 공제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지원대상

- (대상기관)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대상직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기업부설 연구기관 설립요건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확보
- 연구개발활동 수행 시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지원내용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신청·접수

- 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

제출서

- 급여명세서(비과세 항목 적용)

처리절차

- 연말정산 시 비과세 신고 → 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거주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대상

-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지원 대상 세부 요건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지원내용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신청·접수

- 소득공제의 경우 납세지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제출

제출서

- 소득공제신청서, 투자확인서 등

처리절차

- 공제신청서 (주요 제출서) 작성 → 접수 → 공제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연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지원대상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3 및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경우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

지원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신청·접수

- 원청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청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서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처리절차

-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작성 → 접수 → 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지원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을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
- * 코넥스상장기업은 예외적으로 포함됨

전략적 제휴의 요건

-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지원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신청·접수

-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

제출서

- 과세표준신고서, 과세이연신청서

처리절차

- 과세이연신청서 등 (주요 제출서) 작성 → 접수 → 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지원대상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자를 하는 경우
-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7년 이내 기업
-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기업 매각의 요건

-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기업의 주주인 자
- (기업매각 요건)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 양도
- (재투자 기한)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지원내용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 (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 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하지 않음

신청·접수

-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

제출서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등

처리절차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주요 제출서) 작성 → 접수 → 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

지원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청년창업벤처기업 요건

- 창업벤처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청년창업벤처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일 것

지원내용

• 지방세 경감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지방세를 경감
 -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단, 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경감

신청·접수

- 관할시장 (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창업 (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

- 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

- 창업 (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절차

- 감면 신청 (주요 제출서제출)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대표전화: 110, 홈페이지 : <https://www.110.go.kr>)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etax.go.kr>)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벤처기업이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채용시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의 등 지원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이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지원

신청·접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

제출서

- 신청서

- 사업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 다를 수 있음

처리절차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선정 통보 → 최종 지원

- 사업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 다를 수 있음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전화 : 1335, 홈페이지 : <https://www.msit.go.kr>)

법적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제1항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대상

- 벤처기업 임직원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지원내용

-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신청·접수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서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처리절차

- 서제출 → 접수 → 공제적용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대표전화 : 1350, 홈페이지 : 1350.moel.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②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최고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벤처기업은 보증한도 50억원 대상 보증 지원
-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신청 시 '홈페이지 디지털지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신청기업의 업종, 보증받고자 하는 채무의 내용, 신청금액 등이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증 신청 가능

제출서

- 상담과정에서 보증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점검 이후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서를 안내
- 상담시 준비서
 - 사업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 다를 수 있음

처리절차

- 보증신청 (인터넷, 영업점 방문) → 상담 → 접수·조사자료 수집 → 기술평가·조사 → 심사·승인 → 보증 약정 →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https://www.kibo.or.kr/dbranch/index.do>)

법적근거

- 「기술보증규정」제16조제4항 제1호, 제2호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지원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인 신용보증
 -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손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내 디지털지점 (<https://www.kibo.or.kr/dbranch/index.do>)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제출서

- 상담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서준비 안내

처리절차

- 신청기업의 보증신청 → 상담 → 접수·조사자료 수집 → 기술평가·조사 → 심사승인 → 보증 약정 →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내 디지털지점 (<https://www.kibo.or.kr/dbranch/index.do>)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코스닥 상장심사 시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일부 기준 하향 적용

지원대상

- 벤처기업
 - 단,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투자를 받은 이1년이 경과한 기업

지원내용

- 벤처기업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의 일부 기준에서 하향 적용 대상
 - 자기자본 : 30억원 이상 → 벤처기업은 15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이상 → 벤처기업은 10억원 이상
 - 매출액 : 100억원 이상 → 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

신청·접수

- 신규상장 기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 (상장 희망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혹은 당해사업연도)
 -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과학기술기금 벤처기업 투자 허용

제출서

- 상장 유형에 따라 제출 서킷 준비사항 별도 진행

처리절차

- 신규상장 기준 상장신청인과 대표주관회사의 사전준비과정과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공모 후 거래소에 상장되는 절차로 진행
- 상장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까지 약 4개월 기간 소요
- 상장예비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kind.krx.co.kr)을 통하여 공시

문의처

- 한국거래소 민원센터 (대표전화 : 1577-0088, 홈페이지 : www.krx.co.kr)

법적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자금 벤처기업에 투자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영자금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10%)에서 벤처기업에 투자가 가능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번호 : 1335, 홈페이지 : www.msit.go.kr)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제3호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국민연금기금 증식을 위해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지원대상

-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원내용

-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해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

문의처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대표전화 : 1355, 홈페이지 : <https://fund.nps.or.kr>)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7호

농식품투자 모태조합 자산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지원대상

-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정하는 조합

지원내용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투자관리전문기관이란?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6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요건(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 용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
 -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 보유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표전화 : 110, 홈페이지 : www.mafra.go.kr)

법적근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대학교육기관 적립금율을 소속 교원·학생 창업벤처 투자 허용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은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가능

지원대상

-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 10% 한도에서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문의처

- 교육부 (대표전화 : 02-6222-6060, 홈페이지 : www.moe.go.kr)

법적근거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 벤처기업 등 투자 특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창업·벤처기업 등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가능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란?

- 창업·벤처기업 등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

문의처

-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 02-2100-2500, 홈페이지 : www.fsc.go.kr)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 군수품 매출 비중이 5% 미만이라도 방산기업육성자금의
용자지원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 미만인 경우에도 방산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가능
 - 용자규모 및 지원 시기 등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하는 '방위산업 이차보전 용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다름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www.d4b.go.kr)

제출서

-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요약서,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벤처기업확인서, 자금집행계획서 등
 - 사업시행 계획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필요

처리절차

- 용자신청 접수 → 사업, 금액 타당성 검토 → 관리위원회 → 용자추천 (용자사업자 선정) → 대출협의 및 대출실행 →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문의처

- 방위사업청 (대표전화 : 1577-1118 ☎번, 홈페이지 : www.dapa.go.kr)

법적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분야별 우대지원제도 안내 59

③ M&A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간 유예

지원대상

- 벤처기업 중 대기업집단 편입 해당 기업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또는 10년간 유예

세부 요건

-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해당된 날부터 7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10년 이내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대표전화 : 1670-0007, 홈페이지: www.ftc.go.kr)

법적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벤처기업은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소집 기간 단축 적용

지원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지원내용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 통지 가능

- 「상법」상 통지일 : 2주 전 → 벤처기업 : 7일 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제2항

벤처기업 합병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벤처기업 소규모·간이합 병의 특례

벤처기업 소규모·간이합병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대체 가능 기준 우대

지원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지원내용

- 소규모 합병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총대체) : 합병시 존속회사 신주발행수가 전체의 20% 이하일 경우
 - 간이합병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 간이합병(소멸회사 주총대체)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 이상 보유하는 경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9제1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0제1항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결로 주주총회 대체 가능

지원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지원내용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营业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타 회사가 보유하면 주주총회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 분야별 우대지원제도 안내 61

④ 창업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 벤처기업 근무 (대표·임원) 휴직 허용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의 대표 및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

교육공무원이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다른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포함)의 교원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연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기관 및 연구소

공공기관직원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 (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

지원내용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7년간 (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기간 포함) 휴직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콜센터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 (대표·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 가능

지원대상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 연구기관 제외)의 연구원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다른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포함)의 교원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연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기관 및 연구소

지원내용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분야의 연구기관 제외)의 연구원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콜센터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현물 출자 대상 확대

벤처기업은 현물출자의 대상에 지식재산권 포함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대상 확대

-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대상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지식재산권 등')를 포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중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평가 시 공인감정인 외에 기술평가기관도 포함

지원대상

- 벤처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할 경우

지원내용

-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에 기술평가기관도 포함됨

기술평가기관이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만 해당),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그 외 지식재산권 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콜센터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⑤ 입지

벤처기업 창업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특례

벤처기업의 창업자는 그 소속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건축물에 실험실공장 설치 가능

지원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벤처기업 창업자

지원내용

- 벤처기업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 이내로 대학·연구 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을 부여함

신청·접수

- 지원자가 속한 소속기관의 장은 승인·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함
- 해당 기관이 속한 시군의 장은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등록을 해야 함
- 신청자가 퇴직 혹은 졸업을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실공장의 사용이 가능함
- 실험실공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면적이 해당 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봄

제출서

-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배치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18조의2제1항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 자격 특례

벤처기업은 입주중인 창업보육센터 또는 직접지역에 입주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 공장 설치 가능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되는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참고](#)

-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자)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 (예, 기기/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창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 및 연구기관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의 제공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음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집적지역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구조 안전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도시형공장 및 관련 시설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4제2항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18조의3제1항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제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요건

-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의 존재
- 대학이나 연구기관 존재
- 해당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지원내용

- (세제감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의 50% 감면
-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의 35% 감면

(기한 : 2028년 12월 31일)

신청·접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게 제출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

- 창업 (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대표전화: 110, 홈페이지: <https://www.110.go.kr>)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etax.go.kr>)
- 관할 시·군·구청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벤처기업집적
시설 입주 벤처
취득세·재산세
경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요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에 혜택 부여

지원대상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지원내용

- (세제경감)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의 50% 경감
-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의 50% 경감
-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60% 경감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신청·접수

- 기업이 속한 지역 관할 시청, 구청, 군청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

- 창업 (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대표전화: 110, 홈페이지: <https://www.110.go.kr>)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etax.go.kr>)
- 관할 시·군·구청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부여

투자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지원대상

- 임대전용 산업단지 및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지원내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시 벤처기업 우대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 된 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1순위 : 창업중소기업	-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 환경보전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된 공장 이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 우대: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입주
2순위 : 수도권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3순위 :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4순위 : 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5순위 :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우대 :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 우대	

신청·접수

-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역본부 입주지원팀

제출서

- (분양시) 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입주자격 인증서등

처리절차

- (분양시) ① 입주기준 공고 → ② 입주계약 신청 → ③ 입주심사 → ④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기준공고)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에 공고함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
- (입주계약 신청) 서류접수
- (입주심사)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입주자격 및 대상 업종 검토
-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해 대상자 선정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① 입주계약 신청 → ③ 입주심사 → ④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 서류접수
- (입주심사)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입주자격 및 대상 업종 검토
-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관련규정에 적합시 계약 체결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전화 : 070-8895-7000, 홈페이지 : <https://www.kicox.or.kr>)

법적근거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9호) 제12조제4항
-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6호)」분야별 우대지원제도 안내 69

⑥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벤처기업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시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특허 우선심사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 출원인과 기업의 명칭이 일치하고 벤처확인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
 - 다만,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 (업체)가 법인이 아니어서 기업의 명의로 출원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과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일치하고, 출원시 해당 기업이 법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제출

-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확인을 거쳐 특허 및 실용실안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함

신청·접수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제출서

-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우선심사대상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 ① 신청서접수 → ② 신청료 납부 (접수증 발급) → ③ 심사진행 → ④ 결과통보
- 심사료는 특허는 20만원, 실용신안은 10만원

문의처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 : 1544-8080, 홈페이지 : <https://www.kipo.go.kr>)

법적근거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벤처기업 임직원 산업재산권 전용실시권 부여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직중인 교육공무원등이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재산권 이용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직중인 교육공무원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 대학교원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원내용

- 벤처기업의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이용 허락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고려사항

- 전용실시권은 본권의 부수되는 권리로 기존의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함
- 휴직·퇴직 이후 완성한 건에 대해서는 필요 또는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사권을 부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성과에는 적용되지 않음

문의처

- 지식재산청 특허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 : 1544-8080, 홈페이지 : <https://www.kipo.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9제1항~2항

⑦ 인력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을 임직원 포함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한도액도 확대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들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게 스톡옵션 부여 가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신고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을 의미함
- (부여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I) 신주발행, II) 자기주식, III) 차액정산형의 세 가지로 구분됨
 - 신주발행: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서 신주를 발행
 - 자기주식: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서 자기주식을 교부
 - 차액정산형: 대상자가 받은 부여주식의 실질가액이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

- (부여한도)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 (부여가격) 원칙적으로 부여가격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야 하나, 신주발행에 한정하여 시가이하로 부여 가능*

- 일반 주식/상장회사의 행사가격은 실질가액 이상으로 정해야 함

- 시가 이하의 조건
 - 권면액 이상의 행사가격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
 - 계산식 :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수

- (행사기간)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날 혹은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후에 행사기간을 설정함

신청·접수

- 주식매수선택권은 중소기업벤처부에 온라인으로 부여 내역 신고

- 온라인 접수 주소 : www.smes.go.kr (중소벤처24 홈페이지)

제출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정관사본,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그 외에 요청하는 근거서(원본대조필 필요)
-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 서제출 → 신고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5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기준을 완화함 (벤처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 (3년 미만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중기업이 된 날로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표번호 : 1379, 홈페이지 : www.rnd.or.kr)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기업부설창작 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3명 이상으로 완화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정 기준을 완화함 (벤처기업 3명 이상)
 - 중소기업 5명 이상,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표번호 : 1566-1114, 홈페이지 : <https://www.kocca.kr>)

법적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벤처기업 창업자 및 벤처기업 예비창업자는 2년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 연기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대표 (벤처기업 창업자) 및 예비벤처 대표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중 입영 대상자

지원내용

- 2년 내에서 연기가 가능
 - 입영일자 연기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 불가

신청·접수

-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부서 직접/우편 접수
 -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가능

제출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처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서제출 → 서심사 → 결과 통보

문의처

- 병무청 (대표번호 : 1588-9090, 홈페이지 : <https://www.mma.go.kr>)

법적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8호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 훈령 제2160호)」 제22조, 제25조

벤처기업 창업자 입영일자 연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지원대상

-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수를 완화하여 적용 (벤처기업 5명 이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1908호)」 제10조제1항에 의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는 10명 이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 이상

신청·접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접수) 매년 6월 중 실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신청관리 (산업기능요원 신청·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홈페이지 : www.smes.go.kr/sanhakin)

제출서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제출서는 다음과 같음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처리절차

- ◎ 병역지정업체 서접수 → ◎ 평가등급 부여 추천 (매년 7월 31일) → ◎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10월 중) → ◎ 선정결과 통보
 - (서류접수) 병역지정업체 관련 서류 접수
 - (평가등급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권자로 업종별 평가점수 순으로 전체 업체를 20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병무청에 추천
 - (업체선정) 병무청은 추천기관의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업체를 선정 및 통보함
 - (결과통보) 병무청은 현장실태조사 결과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1899-3001)

법적근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1908호)」 제10조제1항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지원대상

- 벤처기업의 경영인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영인

지원내용

- 벤처기업의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음
 -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자료 등에 의하여 공직보자등으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직접입력) 홈페이지 직접입력 <https://www.hrdb.go.kr>
 - 인물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입력 이력서 첨부
- (이메일 송부) 대표이메일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신청서 혹은 개인 소지 이력서를 송부
 - 대표메일주소: hrdb@korea.kr

제출서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 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등록

문의처

- 인사혁신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대표전화 : 110, 홈페이지 : <https://www.mpm.go.kr>)

법적근거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201호)」 제2조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의 여성 임원 및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지원대상

- 벤처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지원내용

- 벤처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음
 -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자료 등에 따라 여성인재로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직접등록) 성평등가족부 여성인재 등록하기 홈페이지 직접입력
 - 홈페이지 : www.mogef.go.kr
-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대표메일주소 : promotion@kigepe.or.kr
 - 팩스번호: 02-3156-6089

제출서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등록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대표번호 : 02)2100-6000,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법적근거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성평등가족부예규 제1호)」 제2조

벤처기업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부여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는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

지원대상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지원내용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에 해당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5호)」 제5조제1항

벤처기업 인턴 근무 학점이수 인정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 벤처기업 인턴 근무 경력 학점이수 인정

지원대상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중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

정보통신 관련 학과

-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함
 1. 전산·컴퓨터 공학
 2.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3. 정보·통신 공학
 4. 전기 공학
 5. 전자 공학
 6. 제어계측 공학
 7. 반도체·세라믹 공학
 8.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10. 그 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지원내용

-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허용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번호 : 1335, 홈페이지 : www.msit.go.kr)

법적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과학기술유공자를 통한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에 필요 경비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과학기술유공자들에 의한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번호 : 1335, 홈페이지 : www.msit.go.kr)

법적근거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⑧ 광고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벤처기업은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의 방식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에서 송출비를 지원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계약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방송광고 송출비를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할인시간대 내·외의 두 가지 단계별 지원으로 구성됨
 - 할인시간대 지원
 - 정상가 기준 70%의 할인가로 판매함
 - (TV) KBS, MBC, EBS
 - (라디오) KBS AM/FM, MBC AM/FM, CBS AM/FM, YTN, BBS, CPBC, WBS, 경인방송 가 해당됨
 - 할인시간대 지원
 - 정상가 청약 구매시 250%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광고를 송출
 - (TV) KBS, MBC, EBS
 - (라디오) MBC-AM/FM, KBS-AM/FM, CBS-AM/FM, YTN, BBS, CPBC, FEBC, WBS, 경인방송, TBS-eFM
 - (기타) DMB, KBS월드

신청·접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baco.co.kr) 온라인 접수 (매월 20일까지)

제출서

- 제출서목록
 -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 벤처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설명 또는 상품설명 카달로그 1부

처리절차

- ○ 지원서온라인접수 (매월 20일까지) → ○ 지원대상선정 (차월 1일)
 - (지원서류 접수) 매달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지원대상선정)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1년 내 광고 미집행으로 인한 자격 상실의 경우, 자격상실 6개월 경과 에 재신청 가능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표번호 : 02-731-7114, 홈페이지 : <https://kobaco.co.kr>)

법적근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광고제작비를 지원하여 높은 방송광고 소재의 제작비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TV 방송광고 혹은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함
- TV는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를 지원함
- 라디오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를 지원함
- 선정된 기업은 공사와의 사업수행 협약체결을 통해 제작비를 지원

신청·접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baco.c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

- 제출서목록

- 신청서 1부,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1부, 기업인증서 각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3개년 재무제표, 가점사항
증빙서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등

처리절차

- ① 사업시행 공고 → ② 지원 신청 → ③ 지원대상 선정 → ④ 사업수행 협약 체결 → ⑤ 사업수행
→ ⑥ 기금지원 신청 → ⑦ 검증 및 지원금결정 → ⑧ 효과평가 조사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표번호 : 02-731-7114, 홈페이지 :
<https://kobaco.co.kr>)

법적근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